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과세 표준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 년 11 월 13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전화번호: 723-5052 (담당: 이지은 간사 010-9395-0958)

소 개 의 원 : 김현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성명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명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2. 11. 13.
<p>소개의견</p> <p>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무리하게 낮추는 등 감세조치를 단행했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p> <p>따라서 기업 감세 중 유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철회해야 하며,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p> <p>한편, 국가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 증세하는 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어 공평과 정의에 맞는 방안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에서 이익을 얻기에 불리한 약자의 지위에 있어 아직은 감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p> <p>이에 법인세의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해 해당기업에 적절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참여연대의 법인세 개정 취지에 대해 동의하며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p>	

소개의원

김현미

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2. 11. 13.

제안자 :

1. 제안이유

2008년 당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금액에 13%를, 1억원 초과 금액에 25%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그런데 그 후 지속적인 세율 인하가 있었음. 재정건전성과 조세형평성을 꾀하기 위하여 종전 무리하게 낮춘 법인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자 함. 한편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 경제에 맞게 조정하고 수익창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적절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낮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정건전성과 능력에 따른 적절한 과세를 위해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고자 함.

2. 개정의 주요내용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라는 3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2억 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라는 4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수정함.

현행 3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10%, 20%, 22%의 법인세율을 10%, 22%, 25%, 27%의 법인세율로 수정함. 즉 아래와 같은 구간과 세율로 수정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2%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25%
1,000억원 초과	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내지 1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100억원 초과 내지 1,000억원 이하	21억 7,600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000억원 초과	246억 7,600만원 +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55條(稅率)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p>	<p>第55條(稅率)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 padding: 5px;">과세 표준</th> <th style="width: 85%; padding: 5px;">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2억 원 이하</td> <td style="padding: 5px;">과세표준의 100분의 10</td> </tr> <tr> <td style="padding: 5px;">2억 원 초 과 200억 원 이 하</td> <td style="padding: 5px;">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td> </tr> <tr> <td style="padding: 5px;">200억 원 초 과</td> <td style="padding: 5px;">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td> </tr> </tbody> </table>	과세 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 원 초 과 200억 원 이 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 원 초 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과세 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 원 초 과 200억 원 이 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 원 초 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② (생략)

과세 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 원 초과 100억 원 이 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100억 원 초 과 1,000 억 원 이하	21억 7,600만원 +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000 억 원 초과	246억 7,600만원 + (1,000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② (현행과 같음)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이석태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번지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김현미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